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1.21.(화), 15:00~16:00
장 소	All Set Admin Center 2층 회의실
참석인원	8명(위원장 신희준, 위원 김동제·이현기·조봉석·구수용·성현곤·소예은·유세현)
불참인원	1명(위원 박현수)
안 건	<p>○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8명 참석으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책정 심의 2. 2019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2020학년도 학교비 예산(안) 심의 4.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건 5.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마련 끝.
회의내용	<p>○ 참석 위원은 안건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다.</p> <p>■ 안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 안건 : 2020학년도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책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비 재정은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의 사유가 충분함 - 등록금을 동결하여 추정한 등록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6억 이상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나, 재학생·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반값 등록금 국가 정책 실현 등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기로 위원 전원 결정함. 2. 제2호 안건 : 2019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34,669,655천원, 비등록금회계 23,932,299천원에서 내부거래 1,787,997천원을 차감 후 56,813,957천원으로 편성한 2019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를 설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매입비로 계상된 약 3억 1천만원은 간호학과 PINE센터(통합시물레이션실습센터)환경개선 시설비로 총공사비는 346,700천원으로 노후건물의 보수가 건물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본지출을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지출예산 편성은 등록금회계 314,460천원, 비등록금회계 50,390천원을 건물매입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설명 - 본 예산 대비 증액된 약 57억원은 지정용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고 기타 전입금등 재원은 대학의 운영비에 충당하여 사용토록 편성하였고, 어려운 여건에서 충실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9학년도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함

회의내용

3. 제3호 안건 : 2020학년도 학교비 예산(안) 심의

- 등록금회계 34,069,374천원, 비등록금회계 23,688,393천원에서 내부거래 1,746,340천원을 차감하여 56,011,427천원으로 편성 함
-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총원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은 10억 이상의 감소가 될 수도 있음이 추정
- 위원장이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은 직전 3개년 물가상승율(1.3%)의 1.5배를 하면 1.95% 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재학학생·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반값 등록금 국가정책 실현 등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학년도 학교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수입예산 추징액보다 대폭 운영을 위한 지출비용이 약 20억 이상의 초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라는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부서간 예산조정에 합의를 하여 2020본예산에 미반영 된 지출은 추경 또는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020학년도 학교비 예산(안)을 위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함.

4. 제4호 안건 :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건

- 위원장이 법인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함.
 - ☞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에서 교육부 승인 신청서 제출하였으며 법정부담금 총액 917,327천원에서 학교부담액 780,370천원, 법인부담액 136,957천원으로 설명함.
- 사학연금 법정부담액은 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에서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기에 결과에 따라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위원 전원 동의로 결정함.



5. 제5호 안건 :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 위원장이 잉여금의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
 - ☞ 집행 용도가 정해진 나머지 금액은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이후 직접교육비에 활용, 장학금지급, 등록금 인하 부분에 사용하기로 정함

○ 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함.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서명부

1. 일시 : 2020.01.21.(화), 15:00~16:00
2. 장소 : All Set Admin Center 2층 회의실
3. 안건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4. 참석자 서명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고
위원장	신희준		
위 원	김동제		
위 원	이현기	이 현 기	
위 원	조봉석	조 봉 석	
위 원	박현수		
위 원	구수용	구 수 용	
위 원	성현곤	성 현 곤	
위 원	소예은	소 예 은	
위 원	유세현	유 세 현	

신희준 나봉석 이현기 김동제 조봉석 구수용 성현곤 소예은 유세현